##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고 제2024-1227호

## 직업안정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

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1조 제5항을 위반한 직업소개사업소에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.

2024. 6. 11.

## 강 서 구 청 장

- 1. 제 목: 직업안정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
- 2. 공고기간: 2024. 6. 11. ~ 2024. 6. 25.(14일간)
- 3. 법적근거: 직업안정법 제36조 제1항,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[별표 2]
- 4. 공고방법: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게재 및 게시판 부착
- 5. 공시송달 대상

사업소명	대표자	소재지	위반내용	처분내용	공시송달사유
개미인력 강서점	송*문	강서구 가로공원로 181, 402호	등록요건 미달 (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1조 제5항)	경고 (1차 처분)	폐문 부재

## 6. 공고내용

가. 처분내용: 개미인력 강서점 1차 처분(경고)

나. 위반내용: 등록요건 미달

다. 의견제출: 2024. 6. 25.(화) 18시 도착 분까지

7. 문의사항: 강서구청 일자리정책과(☎02-2600-6398)로 문의

※ 정당한 사유 없이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제27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에 대한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예정된 행정처분이 시행됨을 알려드립니다.